2013년도 제18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 1. 일 자 2013년 9월 26일(목)
-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 3. 출석위원 김 중 수 의 장(총재)

임 승 태 위 원

박 원 식 위 원(부총재)

하성근 위원

정 해 방 위 원

정 순 원 위 원

문 우 식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강 준 오 부총재보 허 재 성 부총재보

서 영 경 부총재보 신 운 조사국장

성 병 희 거시건전성분석국장 김 민 호 통화정책국장

유 상 대 국제국장 전 승 철 금융통화위원회실장

김 태 석 공보실장 김 남 영 금융시장부장

문 한 근 의사관리팀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40호 -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13년 10월)(안)>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96조 제1항에 의거 통화신용정책 보고 서(2013년 10월)를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금번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의 작성과 위원간 의견조정 등이 주관위원의 지도하에 이루어졌으며, 보고서의 서술대상 기간 및 체제. 보고서 작성의 주안점과 위원협의회 등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및 보완·수 정사항이 다음과 같다고 보고하였음.

먼저 관련부서는 보고서의 서술대상 기간 및 체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동 보고서의 서술대상 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로 하되, 미연준의 9월 FOMC 회의결과와 9월에 수정·발표된 일부 경제지표 등은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며, 보고서 체제는 과거와 동일하게 1장에서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에 대해 상술하고 2, 3장에서는 각각 통화신용정책 운용실적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기술하였음.

이어 관련부서는 보고서 작성의 주안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대상기간 중 통화신용정책 운영과 관련하여 금년 5월의 기준금리인하 배경과 그 효과, 6월 이후의 금리동결 배경 그리고 지난 4월에 있었던 총액한도대출제도 개편의 주요내용 및 의의 등을 충실히 수록하고자 노력하였음. 정책여건과 관련하여서는 본문에서 국내외 금융·경제지표의 변화를 미 연준의 양적완화축소 우려와 연계하여 서술하고, 동 이슈가 신흥국 및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여 '참고'로 수록하는 등 최근 글로벌 금융·경제의 주요 이슈로대두된 미 연준의 양적완화축소와 관련한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였음. 이와 함께미국의 재정긴축현황 및 정부채무한도 관련 논의, 최근 기업자금사정에 대한 평가, 회사채시장의 현황과 평가, 최근 수익률곡선 변화의 특징 및 전망, 금리상승기의 특징 및 시사점 등 국내외 주요 금융·경제 현안이나 향후 통화정책운용 관련 시의성이 높은 주제에 대해 분석하여 '참고'로 수록하였음.

또한 관련부서는 그동안 위원협의회 등에서 논의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일부 위원들은 '참고'의 내용을 본문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 보완하고 일부는 다른 주제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들은 당행의 정책결정 내용 및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을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 제고, 총액한도대 출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중립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또 다른 일부 위원들은 향후 보고서 작성 시에는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대한 내용을 보다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관련부서는 이상과 같은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수정·보 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으며, 아울러 위원들이 동 보고서의 향후 개선방향으로 제시한 의견은 다음번 보고서부터 반영하겠다고 보고하였음.

이와 같은 관련부서의 보고 후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금통위의 의사결정을 대변하는 기록으로서 그 가치가 있으므로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 결과 뿐만 아니라 금리 결정과 관련하여 금통위가 고민한 사항들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또한 동 위원은 당행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와 물가보고서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작성시 물가보고서에서 제시되었던 내용에 대한 판단을 추가할 경우 양 보고서간 연계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13년 10월)(생략)

<의안 제41호 - 2013년 4/4분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결정>

(1) 의장이「한국은행법」제28조 및「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제9조에 의거하여 의안 제41호 — 「2013년 4/4분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결정」을 상정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일부 위원은 최근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이 완화적인 대출태도, 대출확대 노력 강화 등으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및 부도업체수 등 중소기업 자금사정 지표도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 으나, 일부 취약업종의 자금사정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을 지속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3년 4/4분기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전분기와 같이 12조원 수준으로 유지하되 영세자영업자지원한도 1조원을 신용대출지원한도로 전용하는 정책대상 부문간 한도의 일부 조정을 실시하고, 기술형창업지원한도 및 영세자영업자지원한도 개선방안을 계속 강구하여 총액한도대출 지원의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음.

다른 일부 위원들은 영세자영업자지원한도의 일부를 신용대출지원한도로 전용하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지만, 영세자영업자지원한도가 당초 계획에 비해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제도의 도입취지에 맞춰 동 제도가 잘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들은 기술형창업지원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은행에 보다 자율성을 부여하는 가운데 융통성을 발휘해서 동 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한편, 일부 위원은 영세자영업자지원한도 1조원을 신용대출지원한도로 전용한 것과 관련하여 신용대출지원한도의 과거 이용실적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심의결과

의결문 작성ㆍ가결

의결사항

2013년 4/4분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12조원으로 정한다.